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합540030 판결 [계약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변론 종결2020. 10. 7.

판결 선고2020.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경찰학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고는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강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강의 제공 계약서

갑과 을은 '공무원(경찰포함)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강의 제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관계회사 및 제휴한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유·무선 매체를 통하여 '강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목적물)

-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검찰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및 승진시험 경찰학으로 한다.
-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학원에서 파생되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갑에게 제공한다.
- ③ 갑이 경찰스파르타반을 운영할시 을은 모의고사(주 1회 이상), 상담 및 필요한 강의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소 계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는 서면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전속계약)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 및 학원출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화의, 회사정리,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시정 요구를 상대방으로부터 누적하여 5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최고 및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위약벌 등)

을은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기회 이익의 손실이 발생하고 갑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을이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즉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기로 한다.

-다음-

을은 위약벌로서 계약금, 선금금, 강사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본 부가약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고, 동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강의 제공 계약 부가약정서●

갑과 을은 2016년 07월 27.일에 체결한 강의 제공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추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제공 계약 부가약정(이하 본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부가 약정'은 갑과 을이 '원계약'에 추가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

① 갑은 을에게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 이억 원(₩200,000,000)을 아래와 같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가. 은행: C

나. 계좌번호: D

다. 예금주: A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전항의 계약금을 아래와 같은 시기에 위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가. 2016. 7. 까지 : 금 원(₩) 20%

나. 2016. 8. 30.까지 : 금 원(₩) 30%

다. 2017. 12. 31.까지 : 금 원(₩) 50%

제5조(출판권)

을이 저술하는 모든 교재에 대한 출판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도록 한다(인세는 10%로 하되 세부내용은 별도 출판계약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억 원을 계약체결 당일인 2016. 7. 27.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서적 출판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 출판사와 도서 출판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통상 경찰학 관련 강의 서적은 매년 12월경에 출간되는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년 연말에 E 출판사를 통하여 강의 서적을 발간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 제5조(출판권) 위반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 출판사의 F 대표가 참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2016년 강의 도서를 E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할 수 있게 양해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7년 신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새로 지정하는 출판사를 통하여 도서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3) 원고는 2017년 말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 관계사인 G 출판사를 통하여 강의 서적을 발간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계약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의 출판권 관련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이어서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6. 7.경부터 2017. 8.말까지 강의 서적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 제5조(출판권)를 위반하였고, 강의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금 청구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2019. 3. 19.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4) 원고는 2019. 7.경부터 피고의 경쟁업체인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 제2조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 당일에 1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1억 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계약금 1억 원 미지급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1,092,400,000원(① 계약금 손실금액 200,000,000원 + ② 계약기간과 그 이후 발생할 소득 감소액 644,000,000원 + ③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강의소득 248,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① 피고는 단독강의를 구두 상으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사정을 이용하여 약 2년 동안에 3명의 경쟁강사를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강의를 폐강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원고의 매출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영업 가치를 하락시켜, 이후 원고가 다른 학원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의 계약금조차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계약금 손실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아무런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없던 원고의 강의를 방해하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그 후 다른 학원에 출강한 시점에도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6억 4,400만 원(계약 기간 매출 감소분 8,000만 원 + 계약 중단 이후 2030년까지의 매출 감소분 5억 6,400만 원)에 이른다(이하 '소득 감소 주장'이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확히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추가로 배분받아야 할 금액은 248,400,000원이다(이하 '강의소득 미지급 주장'이라 한다).

나. 계약금 1억 원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 제2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금 중 1억 원을 계약체결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계약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날(발송 일주일 후인 2017. 8. 25.)의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금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7. 12. 31.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계약금 1억 원은 원고가 기존에 강의하던 H학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H학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에서 정한 계약금 중 1억원 부분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기존에 강의하던 H학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계약 부가약정 상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러한 약정이 존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금 손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년 동안 3명의 경쟁강사를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득 감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강의 방해와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총 6억 4,4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강의 방해 및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강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피고와의 갈등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강의소득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확히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고 미지급 금액이 248,4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계약 제15조는 '원고가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피고의 경쟁업체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원고가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계약금 등을 모두 피고에게 반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원고가 피고의 경쟁업체에서 강의를 하여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전단이 정한 위약벌 지급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출판권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이 사건 계약 제21조 후단이 정한 위약벌 지급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과 그 2배인 해당하는 금액인 4억 원의 합계인 6억 원 상당의 위약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위약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계약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2)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 제21조 후단 관련 위약벌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연말에 피고가 지정한 출판사가 아닌 E 출판사를 통하여 강의 서적을 발간하였고,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출판권 위반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9. 3. 19.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부가약정 제5조(출판권)를 위반하고, 강의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금 청구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러한 계약 해지의 원인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먼저 출판권 위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6. 7.경 원고는 이미 E 출판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경찰학 관련 강의 서적은 통상 12월경에 출판되므로, 피고로서도 원고가 2016년 말경에는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E 출판사에서 서적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2017. 8.경 피고로부터 출판권 관련 시정 요구를 받고 2017년 말경부터 피고 관계사인 G 출판사를 통하여 강의 서적을 발간한 이후로 피고도 원고에 그 이전의 출판권과 관련하여 별 문제를 삼고 있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 8.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중 출판권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 중에서, 피고가 원고가 강의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21조 후단이 정한 위약벌 지급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전단 관련 위약벌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9. 3. 19.자 해지 통지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9. 3. 19.자 해지 통지를 받은 이후 더 이상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3. 19. 해지 통지를 보낼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인 2019. 7.경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속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전단이 정한 위약벌 지급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2020.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 18.자로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갑 제14호증), 2020. 4. 18.자 내용증명(갑 제18호증)으로 이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경 쌍방의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이후 원고의 해지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약벌 지급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천무환

판사강면구

- 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17. 12. 31. 계약금 잔금이 이행지체에 빠진 날'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는 '2017. 12. 31.'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2)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9. 12. 12.자 준비서면 진술하고 종전의 '강의제공계약 부가약정서 제5조에 따른 원고의 출판권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철회하고, '강의제공계약(갑 2호증) 제15조, 제21조에 따른 원고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을 한다"고 진술하여 출판권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철회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의 변론 내용 등 전체적인 주장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